

독일 장애인동등지위법(Behindertengleichstel- lungsgesetz)에 대한 입법평가 고찰

신 옥 주*

Contents

- I. 서론
 - II. 장애인동등지위법의 주요내용
 - III. 장애인동등지위법에 대한 입법평가와 그 영향
 - IV. 결론
-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서론

독일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자기결정에 따른 삶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실질적 평등실현, 차별금지과 참여 촉진의 두 축으로 하여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인권실현을 위한 법률들의 구조는 최상위의 기본법(GG)상 장애인차별금지, 일반법으로서 일반적 동등처우법(AGG),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는 장애인동등지위법(BGG), 그리고 사회법전 제9권(Sozialgesetzbuch IX: SGB IX)이 있다.

장애인의 사회와 노동참여의 실현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일반적으로 장애인법으로 불리는 사회법전 제9권이다. 원래 제9권은 장애인 관련의 일반적 규정이었으나, 2007년 사회법전 제9권 제2장으로 독립법으로 존재하였던 중증장애인법이 삽입되었다. 사회법전 상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법제의 정비차원을 넘어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Paradigma)의 변화를 반영한다. 기존에는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으로 보고 국가가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시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으로 파악하였다면, 이제는 장애인이 ‘사람’으로서 사람이 누리는 권리를 당연히 가진다고 보며, 장애인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사회와 노동참여에 대한 권리의 실현이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갖게 되므로 국가가 ‘장애’로부터 발생하는 단점을 국가가 상쇄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특별법적 성격인 장애인동등지위법은 차별을 금지함과 더불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평등실현의 기초를 ‘장애물 없음(Barrierenfrei)’에 두고 있다. 즉,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 원칙적으로 자력으로 접근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동등지위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정치, 문화, 사회 법학적 측면에서 동법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입법평가보고서는 2014.5.31. 제출되었다.

우리나라도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현행 차별금지법과 장애인 관련 법률들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도출된 결과물을 가지고 시작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비교법적으로 독일의 장애

인 동등지위법과 동법에 대한 입법평가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인의 권리중 차별금지과 평등권, 자기결정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질적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일조하기 위한 것이다.

II. 장애인동등지위¹⁾법(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BGG)²⁾의 주요내용

(1)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한 법적 구조와 주요내용

독일은 장애인의 약 90%가 중증장애인인 중증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법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2016년 장애인동등지위법개정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장애에 대한 개념정의가 바뀐 것이다. 기존에는 장애를 기능손상을 중심으로 “장애는 어떤 사람의 신체적 기능(körperliche Funktion), 정신적 능력(geistige Fähigkeit)³⁾,

1) 성(장애)의 동등지위(Gleichstellung)개념은 차별금지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저대표되던 한 성(장애)의 동등한 대표성 확보를 포함하여 직업생활영역에서 질적인 의미에서의 정의(Gerechtigkeit)를 목표로 한다. 동등처우(Gleichbehandlung)의 개념은 동일한 법적지위(Rechtslage)에 있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동권원칙과 동등처우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법영역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원래 민법의 제242조의 배려적 사고(Fürsorgedanken)에서 시작하여 발전한 원칙으로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객관적 근거없이 비교대상인 법적지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 비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Bundeszentrale der politische Bildung. 이러한 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주장은 정치적 구호로서 선명하기는 하지만 실질적 평등실현의 관점에서 보면 그 단어자체가 주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장애인평등실현법, 일반적 평등실현법 등도 한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독일의 용어사용을 참조해도 좋을것으로 생각한다.

2) Gesetz zur Gleichstellung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 BGG) BGG Ausfertigungsdatum: 27.04.2002

Vollzitat: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vom 27. April 2002 (BGBl. I S. 1467, 1468), das zuletzt durch Artikel 2 des Gesetzes vom 19. Juli 2016 (BGBl. I S. 1757) geändert worden ist“

Stand: Zuletzt geändert durch Art. 2 G v. 19.7.2016 I 1757

3) 통상 4분야로 평가한다. 정신적 능력은 일의적으로 정의될 수 없으나, 지적 능력의 저하에 한정되지 않는다. 지적 능력, 방법적 능력, 인격적 능력, 사회적 능력의 분야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또는 정서적 건강(seelische Gesundheit)⁴⁾, 감각의 손상이 큰 개연성을 가지고 그 사람 연령의 전형적인 상태로부터 6개월 이상 벗어났고, 그로 인해 그 사람의 공동체 참여가 침해되었을 때 존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16년 개정 후에는 장애를 환경과의 관계에서 동등한 참여가 침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3조는 장애인 정의규정이다. 동법상 장애인이란 “장기간 신체적(körperlich) 제한, 심리적(seelisch) 제한, 정신적(geistige)제한” 또는 “감각적 제한(Sinnesbeeinträchtigung)⁵⁾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제한들이 편견(Einstellung)과 환경상의 장애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장애인의 사회에 대한 동권적인 참여가 방해될 수 있게 된다. (장애가)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6개월이상 지속하는 시간이면 이는 장기간이다.”⁶⁾ 장애에 대한 정도는 GdB⁷⁾로 나타낸다. 원호청에서 한 사람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모든 방해(Störung)요소와 함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장애정도(GdB)판정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회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⁸⁾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독일에서는 장애인의 차별을 기본법과 일반적 동등처우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AGG)에서 금지하고 있다.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장애인동등지위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하여 차별금지과 장애물없음(Barrierenfrei)을 도구로 하여

4) 심리적 질병(Psychische Erkrankung) 예컨대 공포, 조울증, 반-아웃신드롬, 거식증, 인격장애, 정신병, 틱신드롬, 중독, 분열 등을 말한다.

5) 동법에 대한 입법평가 후 2016년 법개정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장애개념의 변화로서 감각제한을 포함한 것이다. 유엔장애인 인권협약의 장애개념에 맞추어 개정이 이루어졌다. § 1 der UN-BRK in deutscher Fassung (Schattenübersetzung): „Zu den Menschen mit Behinderungen zählen Menschen, die langfristige körperliche, seelische, geistige oder Sinnesbeeinträchtigungen haben, die in Wechselwirkung mit verschiedenen Barrieren ihre volle und wirksame Teilhabe gleichberechtigt mit anderen an der Gesellschaft behindern können.“

6) § 3 Menschen mit Behinderungen
Menschen mit Behinderungen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Menschen, die langfristige körperliche, seelische, geistige oder Sinnesbeeinträchtigungen haben, welche sie in Wechselwirkung mit einstellungs- und umweltbedingten Barrieren an der gleichberechtigten Teilhabe an der Gesellschaft hindern können. Als langfristig gilt ein Zeitraum, der mit hoher Wahrscheinlichkeit länger als sechs Monate andauert.

7) 장애정도는 GdB 20부터 장애로 보며 GdB 100까지 있는데 각 장애정도별 격차 10씩이다. 자세한 것은 신옥주, 독일 장애인법제를 통해 살펴 본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급부·감면서비스 개편방향, 법학논총, 제33집 제2호(2016.6.) 참조.

8) 신옥주, 독일의 장애인 통합을 위한 법제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6호 2014.12.; 보건복지부/한국법제연구원, 장애인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방향 연구, 2014.12.에 발간된 용역연구 보고서 중 필자가 집필한 독일부분의 요약·정리임.

실현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법전 제8권에서 장애인의 사회 및 노동참여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적 구조가 장애인의 인권과 실질적 평등을 용이하게 해 주고 있다.

최고규범인 기본법 제3조 제3항⁹⁾은 차별금지규정으로서 1문에서는 다양한 사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¹⁰⁾하고 제2문에서는 “누구든지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¹¹⁾고 규정함으로써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 동등처우법은 차별금지를 위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진다. 동법의 목적은 인종 및 종족, 종교 및 세계관, 연령, 장애, 그리고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감소시키거나 종식시키는데 있다. 입증책임의 완화, 차별금지위반에 대한 작업장근로위원회와 사무직근로위원회, 또는 그 작업장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제소권 부여, 단체소송의 인정규정을 두고 있다.¹²⁾

장애인이 자기결정권보장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그리고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한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사회법전 전체에 걸쳐 의미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사회법전 제1권 제1조에서는 장애인 또는 장애위험을 받는 사람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삶에 대한 동권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차별을 감소시키거나 차별에 대항하기 위하여 동법상 및 관련 법상의 급부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법전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더불어 장애인 간의 차별금지도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사회법전 제9권 제1장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정도(GdB) 50이하이지만 최소장애정도(GdB) 30이상인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9권 제2장 중증장애인법 제68조에서는 중증장애인법의 효력범위를 정하면서 장애정도(GdB) 30-50미만의 장애인들도 신청하면 중증장애인에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 중증장애인법의

9) 기본법 제3조 3항의 차별금지사유는 2000/43/EG와 유사하다. 지침에 있는 사유 중 성적 지향과 연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세한 분석은 Robert Uerpman-Wittzack, Gleiche Freiheit im Verhältnis zwischen Privaten: Artikel 3 Abs. 3 GG als unterschätzte Verfassungsnorm, in: ZaöR V 68(2008)

10) (3) Niemand darf wegen seines Geschlechtes, seiner Abstammung, seiner Rasse, seiner Sprache, seiner Heimat und Herkunft, seines Glaubens, seiner religiösen oder politischen Anschauungen benachteiligt oder bevorzugt werden.

11) Niemand darf wegen seiner Behinderung benachteiligt werden.

12) 자세한 내용은 신옥주, 독일의 성별입법영향평가 고찰, 입법평가 창간호, 2009. 참조.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예컨대 제9권 제2장 제85조 이하에서는 중증장애인과 이들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장애인들의 특별한 해고보호규정들이 있는데,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들도 동 규정상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러한 동등처우규정의 예외는 사회법전 제9권 제2장 제125조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의 휴가연장, 제13장 중증장애인 무료교통수단이용권에 관한 규정이다.

사회법전 제9권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보장을 위한 법이다. 제1장에서는 장애인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장 제68조 이하의 중증장애인법¹³⁾은 중증장애인의 교육과 직업에 대한 포괄적인 동권적(gleichberechte) 참여(Teilhabe)를 목표로 삼고 있다.¹⁴⁾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중증장애인의 노동, 직업, 공동체의 일반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일련의 장애장점(Vorteile)들을 구상하고 이를 동법 속에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의 적용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GdB)가 최소 50을 넘고, 독일에 거주하고 그들의 주 체류지가 독일이거나 독일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이다. 외국인인지 여부는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회법전 제9권 제9조에 따라 급부에 대한 결정과 급부의 실행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수급권자의 정당한 희망에 따라야 하며, 개인적 삶의 상황, 성별, 연령, 가족 및 종교적 세계관적인 욕구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아동부모가 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하여 가지는 특별한 욕구도 충족되어야 한다. 재할담당자가 물적 급부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 수급권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급부, 서비스, 시설은 수급권자가 가능하면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의 삶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은 결정여지를 주어야 하고 수급권자의 자기결정을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급부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17조에서는 수급권자가 가능한 한 자기결정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예산의 실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확정된 필요를 다양한 재할담당기관과 사회복지조도움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종합적으로 급

13) 이 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군대상, 혹은 군대 유사한 업무수행을 통해 건강상 손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연방원호법(Bundesversorgungsgesetz)이다.

14) Feldes/Kamm/Peiseler/Rehwald/von Seggern/Westermann/Witt: Schwerbehindertenrecht. Basiskommentar zum SGB IX mit Wahlordnung. 10. Auflage. Bund-Verlag, Frankfurt am Main 2009.

부를 시행한다. 개인예산은 매월 현금급부로 실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물품권(Gutschein)으로 지급될 수 있다.

(2) 장애인동등지위법의 주요내용

2002.5.1. 발효(2002.04.27.제정)된 장애인동등지위법(BGG)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법은 총6장¹⁵⁾ 제19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2014년 입법평가의 결과를 수용하면서 2016년 대폭 개정되었다. 이하의 내용은 2016년 개정법의 내용이다.

1) 일반적 규정

제1장은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제1조에서는 법의 목적과 공권력 담당자의 책임을 규정한다. 제1항에 따른 법의 목적은 장애인차별을 저지하고, 이를 종식시키며, 장애인이 가지는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공동체의 삶에 대한 동권적인 참여를 보장¹⁶⁾하고, 장애인의 욕구가 고려되면서 스스로가 결정한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2항에 따라 연방행정기관들(Dienststellen)과 기타의 연방행정기구들(sonstige Einrichtung der Bundesverwaltung), 연방직속의 법인, 시설, 공법상 재단 및 공법상 업무를 담당하는 한도 내에서의 수명기관(Beliehene), 기타 연방기구들은 그들의 업무영역의 범주내에서 제1항에서 언급된 목적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야 하고, 조치들을 계획함에 있어서 이 목적들을 고려해야 한다. 연방법을 시행하는 한도에서 주직속의 법인, 시설, 공법상 재단 행정청도 이와 동일하다. 그리고 제3조에 따라 공권력 담당자는 공권력의 담당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

15) 제1장 일반적 규정(Allgemeine Bestimmungen), 제2장 동등지위와 장애물 없음을 위한 의무(Verpflichtung zur Gleichstellung und Barrierefreiheit), 제3장 장애물 없음을 위한 연방처(Bundesfachstelle für Barrierefreiheit), 제4장 법적 보조수단(Rechtsbehelfe), 제5장 장애인 이익을 위한 연방정부 수임관(Beauftragte oder 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Belang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제6장 참여촉진(Förderung der Partizipation)

16) 구체적인 노동과 교육의 참여를 위한 급부의 다양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법제연구원 2015.12. 연구보고서중 필자가 작성한 독일부분 참조.

는 사법상의 법인이나 시설에서 동법상의 목적이 일반적으로 고려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항에서는 연방을 외국에서 대표는 그 업무의 수행내에서 동법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 제3조 제2항상의 남녀평등을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도 관철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남녀동권의 관철을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청(Belange)이 고려되어야 하며, 현존하는 차별이 철폐되어야 한다. 그 경우 장애여성의 실질적인 동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들은 허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장애인 정의규정이다. 동법상 장애인이란 장기간 신체적 제한, 심리적 제한, 정신적 제한 또는 감각적 제한¹⁷⁾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제한들이 편견(Einstellung)과 환경상의 장애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장애인의 사회에 대한 동권적인 참여가 방해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가)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6개월이상 지속하는 시간이면 이는 장기간이다.¹⁸⁾

제4조에서는 “장애물 없음(Barrierefreiheit)”을 규정¹⁹⁾하고 있다. 차단물이 없다는 것은 건축 및 기타 시설, 교통수단, 기술적인 이용객체, 정보처리 시스템, 음향시각적 정보원과 통신시설 및 기타 삶의 영역들에서 장애인이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접근이 가능하고 사용할

17) 동법에 대한 입법평가 후 2016년 법개정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장애개념의 변화로서 감각제한을 포함한 것이다. 유엔장애인 인권협약의 장애개념에 맞추어 개정이 이루어졌다. § 1 der UN-BRK in deutscher Fassung (Schattenübersetzung): „Zu den Menschen mit Behinderungen zählen Menschen, die langfristige körperliche, seelische, geistige oder Sinnesbeeinträchtigungen haben, die in Wechselwirkung mit verschiedenen Barrieren ihre volle und wirksame Teilhabe gleichberechtigt mit anderen an der Gesellschaft behindern können.“

18) § 3 Menschen mit Behinderungen

Menschen mit Behinderungen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Menschen, die langfristige körperliche, seelische, geistige oder Sinnesbeeinträchtigungen haben, welche sie in Wechselwirkung mit einstellungs- und umweltbedingten Barrieren an der gleichberechtigten Teilhabe an der Gesellschaft hindern können. Als langfristig gilt ein Zeitraum, der mit hoher Wahrscheinlichkeit länger als sechs Monate andauert.

19) § 4 Barrierefreiheit

Barrierefrei sind bauliche und sonstige Anlagen, Verkehrsmittel, technische Gebrauchsgegenstände, Systeme der Informationsverarbeitung, akustische und visuelle Informationsquellen und Kommunikationseinrichtungen sowie andere gestaltete Lebensbereiche, wenn sie für behinderte Menschen in der allgemein üblichen Weise, ohne besondere Erschwernis und grundsätzlich ohne fremde Hilfe zugänglich und nutzbar sind.

수 있다면, 이를 장애인을 위하여 차단물이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제8조에 따라 건축과 교통영역도 역시 차단물이 없이 구성되어야 하고, 제11조에서는 정보기술영역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위해 차단물이 없어야 함을 규정을 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사적 영역에서의 차단물없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애물 없음’에 대한 목표합의(Zielvereinbarung) 규정이다. 즉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제15조²⁰⁾상의 단체들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들이 사물적, 공간적 조직과 활동범위에서 장애물없는 상태를 만들도록 목표합의를 하여야 하고, 법상 승인된 단체는 목표합의를 위한 협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동등지위와 장애물없음을 위한 의무 및 장애물 없음을 위한 연방처

제7조 제1항에서는 법 제1조 제1항상의 공권력이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강제적(zwingend)인 근거 없이 상이한 처우를 받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삶에서의 참여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침해받으면 차별이 존재한다고 본다. 또한 현행 일반적 동등처우법(AGG) 제3조 제3항, 4항에서 의미하는 괴롭힘(Belästigung)에 있어서도 차별이 존재한다. 장애물없는 상태의 구축에 대한 위반은 차별의 존재가 유추되며, 이러한 차별유추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반박이 가능하다.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적당한 대책(angemessene Vorkehrung)을 취하지 않는 것도 동법상의 장애물(Barriere)를 상정하는데, 적당한 대책들이란 개별사안에서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합하고 요청되는 조치이며, 이러한 조치는 공권력을 비례에 맞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주지는 않아야 한다. 제3항에서는 비장애인에 비하여 장애인에 현존하는 차별의 영역에서 차별을 철폐하고 제거하기 위한 특별조치들을 허용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20) 동법 제15조상의 장애인단체는 직접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범위반에 대하여 행정명령과 사회법원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이 단체들에게는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 진다.

평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히 장애여성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른 법률규정에서의 특별한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 특히 사회법전 상의 규정들은 그대로 유효하다.

제8조는 건축과 교통영역에서 장애물없는 상태의 구축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에 따라 연방직속 법인, 시설, 공법상 법인을 포함한 연방재산에서 사적인 신축건물, 개축건물, 확장건물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술'에 상응하여 장애물없는 상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른 해결책을 가지고 동일한 정도로 장애물 없음상태에 대한 요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물없는 상태의 구축에 대한 요청을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제3항에 따라 연방기관들과 헌법기관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건물들과 연방직속 법인, 시설, 공법상 법인들을 포함하는 연방재산건물에 대하여 2021.7.30.까지 그 장애물제거의 수준에 대하여 보고를 해야 하고 지속적인 장애물의 제거를 위하여 기속적이며 심사가 가능한 조치들과 시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9조²¹⁾는 수화와 다른 의사소통보조수단(Kommunikationshilfe) 사용에 대한 권리를, 그리고 제10조²²⁾에서는 법 제1조 제1항 1문상의 공권력 담당자가 통지

21) § 9 Recht auf Verwendung von Gebärdensprache und anderen Kommunikationshilfen

- (1) Menschen mit Hörbehinderungen und Menschen mit Sprachbehinderungen haben nach Maßgabe der Rechtsverordnung nach Absatz 2 das Recht, mit Trägern öffentlicher Gewalt im Sinne des § 1 Absatz 2 Satz 1 zur Wahrnehmung eigener Rechte im Verwaltungsverfahren in Deutscher Gebärdensprache, mit lautsprachbegleitenden Gebärden oder über andere geeignete Kommunikationshilfen zu kommunizieren. Auf Wunsch der Berechtigten stellen die Träger öffentlicher Gewalt die geeigneten Kommunikationshilfen im Sinne des Satzes 1 kostenfrei zur Verfügung oder tragen die hierfür notwendigen Aufwendungen.
- (2) Das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estimmt durch Rechtsverordnung, die nicht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bedarf,
 1. Anlass und Umfang des Anspruchs auf Bereitstellung von geeigneten Kommunikationshilfen,
 2. Art und Weise der Bereitstellung von geeigneten Kommunikationshilfen,
 3. die Grundsätze für eine angemessene Vergütung oder eine Erstattung von notwendigen Aufwendungen für den Einsatz geeigneter Kommunikationshilfen und
 4. die geeigneten Kommunikationshilfen im Sinne des Absatzes 1.

22) § 10 Gestaltung von Bescheiden und Vordrucken

- (1) Träger öffentlicher Gewalt im Sinne des § 1 Absatz 2 Satz 1 haben bei der Gestaltung von Bescheiden, Allgemeinverfügungen, öffentlich-rechtlichen Verträgen und Vordrucken eine Behinderung von Menschen zu berücksichtigen. Blinde und sehbehinderte Menschen können zur Wahrnehmung eigener Rechte im Verwaltungsverfahren nach Maßgabe der Rechtsverordnung nach Absatz 2 insbesondere verlangen, dass ihnen Bescheide, öffentlich-rechtliche Verträge und Vordrucke ohne zusätzliche Kosten auch in einer für sie wahrnehmbaren Form zugänglich gemacht werden.

등에 있어서 장애인을 고려해야 하며, 행정절차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를 사용하여 서류를 작성할 것을 규정한다. 그리고 제11조²³⁾에서는 모든 공권력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정보를 제공할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2조²⁴⁾는 장애물없는 정보기술에 관한 규정이다. 법 제1조 제2항 1문상의 공권력은 제2문

(2) Das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estimmt durch Rechtsverordnung, die nicht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bedarf, bei welchen Anlässen und in welcher Art und Weise die in Absatz 1 genannten Dokumente blinden und sehbehinderten Menschen zugänglich gemacht werden
23) § 11 Verständlichkeit und Leichte Sprache

Träger öffentlicher Gewalt im Sinne des § 1 Absatz 2 Satz 1 sollen Informationen vermehrt in Leichter Sprache bereitstellen. Die Bundesregierung wirkt darauf hin, dass die in Satz 1 genannten Träger öffentlicher Gewalt die Leichte Sprache stärker einsetzen und ihre Kompetenzen für das Verfassen von Texten in Leichter Sprache auf und ausgebaut werden.

쉬운 언어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 Verordnung zur Schaffung barrierefreier Informationstechnik nach dem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Barrierefreie-Informationstechnik-Verordnung - BITV 2.0)

Ausfertigungsdatum: 12.09.2011

Vollzitat: "Barrierefreie-Informationstechnik-Verordnung vom 12. September 2011 (BGBl. I S. 1843), die durch Artikel 5 Absatz 3 des Gesetzes vom 19. Juli 2016 (BGBl. I S. 1757) geändert worden ist"

24) § 12 Barrierefreie Informationstechnik

(1) Träger öffentlicher Gewalt im Sinne des § 1 Absatz 2 Satz 1 gestalten ihre Internetauftritte und -angebote sowie die von ihnen zur Verfügung gestellten grafischen Programmoberflächen, einschließlich Apps und sonstiger Anwendungen für mobile Endgeräte, die mit Mitteln der Informationstechnik dargestellt werden, nach Maßgabe der nach Satz 2 zu erlassenden Verordnung schrittweise technisch so, dass si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grundsätzlich uneingeschränkt genutzt werden können. Das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estimmt durch Rechtsverordnung, die nicht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bedarf, nach Maßgabe der technischen, finanziellen und verwaltungsorganisatorischen Möglichkeiten

1. die in den Geltungsbereich der Verordnung einzubeziehenden Gruppen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2. die anzuwendenden technischen Standards sowie den Zeitpunkt ihrer verbindlichen Anwendung,
3. die zu gestaltenden Bereiche und Arten amtlicher Informationen.

(2) Träger öffentlicher Gewalt im Sinne des § 1 Absatz 2 Satz 1 gestalten ihre allgemeinen, für die Beschäftigten bestimmten Informationsangebote im Intranet sowie ihre elektronisch unterstützten Verwaltungsabläufe, einschließlich Verfahren zur elektronischen Vorgangsbearbeitung und elektronischen Aktenführung, schrittweise barrierefrei. Hierzu ist die Barrierefreiheit entsprechend den allgemein anerkannten Regeln der Technik, insbesondere bei Neuanschaffungen, Erweiterungen und Überarbeitungen, bereits bei der Planung, Entwicklung, Ausschreibung und Beschaffung zu berücksichtigen. Von dem Gebot der barrierefreien Gestaltung kann mabgesehen werden, wenn die barrierefreie Gestaltung unverhältnismäßigen technischen Aufwand erfordert.

Die Regelungen zur behinderungsgerechten Einrichtung und Unterhaltung der Arbeitsstätten zu Gunsten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in anderen Rechtsvorschriften, insbesondere im Neunten Buch Sozialgesetzbuch, bleiben unberührt. Die obersten Bundesbehörden erstellen bis zum 30. Juni 2021 Berichte über den Stand der Barrierefreiheit der Informationsangebote und Verwaltungsabläufe nach Satz 1 und verbindliche und überprüfbare Maßnahmen- und Zeitpläne zum weiteren Abbau von Barrieren.

에 따른 명령에 의거하여 장애인이 인터넷 출연과 인터넷상의 제안 및 그들이 사용하는 그래픽프로그램의 표면, 앱, 기타 모바일 정보기술 수단으로 상정되는 기구들을 점차 기술적으로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방노동사회부는 연방참사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명령을 통하여 기술적, 재정적, 행정조직적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서 1. 장애인과 관련된 명령의 효력범위, 2. 적용해야 하는 기술적 수준 및 기속적인 적용시점, 3. 공적 정보의 영역과 종류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13조에서는 ‘장애물 없음을 위한 연방전문처(Bundesfachstelle für Barrierefreiheit)’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제1항에 따라 ‘독일 광산-철도-해양(Knappschaft-Bahn-See) 연금보험’에 장애물 없음을 위한 연방전문처를 설치한다.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장애물 없음을 위한 연방전문처’는 법제1조 제2항상 공권력을 위하여 장애물없음과 관련된 문제의 중심적 전진기지(zentrale Anlaufstelle)이며, 이외에 경제, 단체, 시민사회를 위하여 질의가 오면 자문을 한다.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물없음 관련 문제의 중심 전진기지
2. 장애물없음의 구축을 위한 지원정보의 준비(Bereitstellung), 엮기(Bündelung), 계속적 발전>Weiterentwicklung)
3. 처분가능한 재정적 · 인적 자원의 범주내에서 제5조에 따른 목표합의시 참여자 지원
4. 네트워크 구축
5. 장애물없음의 정보상태의 개선, 장애물없음의 구축을 위하여 연구계획 동반
6. 대중작업을 통한 의식형성

장애인단체의 대표가 다수 참여하는 전문가집단이 이 전문처를 자문한다. 제3항에 따라 연방 노동사회부가 제2항에서 열거한 업무에 관한 감독을 담당한다.

3) 법적 보조수단

제14조에 따라 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2문 또는 제12조 제1항, 그리고 제4조, 제6조 제항의 권리침해를 받은 장애인을 대신 하여 권리를 직접침해당하지 않은 법제15조상의 단체가 행정법원과 사회법원에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제15조에서는 동조 제3항에 따라 법률상 인정받은 단체²⁵⁾가 차별금지규정의 위반사안에서 행정법원 또는 사회법원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함으로서 단체소송규정을 두고 있다. 제15조에 따라 연방정부는 장애인의 이해를 위해 관리를 두거나 수입관(Beaufragten)²⁶⁾을 임명한다. 장애인 수입관의 업무는 연방으로 하여금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하여 동등한 가치를 가진 삶의 조건들을 배려하도록 하고, 동등한 삶을 위한 조건들을 모든 공동체 영역에서 충족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수입관에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처를 둔다.

25) (3) Auf Vorschlag der Mitglieder des Beirates für die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die nach § 64 Abs. 2 Satz 2, 1., 3. oder 12. Aufzählungspunkt des Neunten Buches Sozialgesetzbuch berufen sind, kann das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die Anerkennung erteilen. Es soll die Anerkennung erteilen, wenn der vorgeschlagene Verband

1. nach seiner Satzung ideell und nicht nur vorübergehend die Belange behinderter Menschen fördert,
2. nach der Zusammensetzung seiner Mitglieder oder Mitgliedsverbände dazu berufen ist, Interessen behinderter Menschen auf Bundesebene zu vertreten,
3. zum Zeitpunkt der Anerkennung mindestens drei Jahre besteht und in diesem Zeitraum im Sinne der Nummer 1 tätig gewesen ist,
4. die Gewähr für eine sachgerechte Aufgabenerfüllung bietet; dabei sind Art und Umfang seiner bisherigen Tätigkeit, der Mitgliederkreis sowie die Leistungsfähigkeit des Vereines zu berücksichtigen und
5. wegen Verfolgung gemeinnütziger Zwecke nach § 5 Abs. 1 Nr. 9 des Körperschaftsteuergesetzes von der Körperschaftsteuer befreit ist.

26)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Belange behinderter Menschen. - Politische und soziale Rahmenbedingungen mitgestalten; Informieren - beraten - Öffentlichkeitsarbeit leisten - Inklusionsgedanken verbreiten. Grenzen der Beratung: Die Behindertenbeauftragte hat keine Möglichkeit, Behörden oder anderen Stellen Weisungen zu erteilen bzw. ein bestimmtes Handeln vorzuschreiben. in:

http://www.behindertenbeauftragte.de/DE/DieBeauftragte/DieAufgabe/Aufgabe_node.html#doc1825870bodyText1

III. 장애인동등지위법에 대한 입법평가와 그 영향

연방정부는 2009년 독일에서 발효된 UN 장애인인권협약의 실현을 위한 액션 플랜에서 장애인동등지위법을 평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연방노동사회부의 수탁 과제로 카셀대학에서 담당했던 입법평가는 2013.4.1부터 2014.5.31의 기간동안 이루어졌으며, 사회학적 조사를 토대로 하고 법적, 의료, 경제적 측면까지 매우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입법평가후 2016년 장애인동등지위법이 개정이 되어 장애개념을 비롯하여 내용상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일반적 장애인동등지위법을 평가 분석하는데 있어서 유엔 장애인인권협약을 중심적인 분석 및 해석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하에서는 2016년 개정정의 장애인동등지위법을 대상으로 한 입법평가보고서²⁷⁾의 내용 중 법학적 측면에서의 평가를 장애, 차별, 장애물없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입법평가가 법개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애개념의 분석

사회법전 제9권 제2조 제1항 1문상의 장애개념을 그대로 수용한 법제3조²⁸⁾에서 규정하는 장애개념²⁹⁾은 유엔 장애인인권협약 제1조 2문 “오랫동안 신체적, 심인적, 정신적 또는 감각적 제한을 가지며, 이러한 제한들로 인해 다양한 장애물들과 상호작용속에서 유용하고 동권적인 사회참여를 방해받을 수 있는 사람”³⁰⁾이 장애인에 속한다는 규정과 차이를 보인다. 또 동 협약상의 장애개념에

27) Uni. Kassel Humanwissenschaft(FB01), Evaluation des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es im Auftrag des 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es, Abschlussbericht, Leitung: Prof. Dr. jur. Felix Welti. 1. Mai 2014.

28) (구)제3조: Menschen sind behindert, wenn ihre körperliche Funktion, geistige Fähigkeit oder seelische Gesundheit mit hoher Wahrscheinlichkeit länger als sechs Monate von dem für das Lebensalter typischen Zustand abweichen und daher ihre Teilhabe am Leben in der Gesellschaft beeinträchtigt ist.

29) 구 장애인동등지위법(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BGG) 제3조 Menschen sind behindert, 'wenn ihre körperliche Funktion, geistige Fähigkeit oder seelische Gesundheit mit hoher Wahrscheinlichkeit länger als sechs Monate von dem für das Lebensalter typischen Zustand abweichen und daher ihre Teilhabe am Leben in der Gesellschaft beeinträchtigt ist. 사회법전 제9권 제1장 제2조의 장애정의도 이와 같다.

는 장애인동등지위법상의 장애개념에서 규정하는 기간상의 제한이 들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장애물과의 상호작용에서 사회적 삶에 대한 참여에 방해를 받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장애개념은 개선이 필요하며 그때까지는 동 협약에 준하여 장애개념이 이해될 필요가 있다.³¹⁾

현행 장애인동등지위법 제3조상의 장애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징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체적, 정신적, 혹은 정서적 원인을 가진 기능장애(Funktionsstörung)가 있어야 한다. 육체적 기능에 있어서는 단지 움직임제한 또는 다른 기관상의 장애뿐만 아니라 넓게 포괄하여 “감각침해(Sinnesbeeinträchtigung)”도 포함해야 한다.

둘째, 건강상의 제한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따라서 6개월 미만의 단기의 침해는 장애가 아니다. 그러나 질병이 이미 6개월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상태가 이 기간을 넘어서 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진단이 내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점은 이미 입법자가 사회법전 제9권 장애개념정의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개별적 필요에 따라서 가능한 조기에 시작해야 하는 자활을 장애개념의 시간적 요소 때문에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셋째, 그 상태가 각각의 연령에서 비전형적(untypisch)이어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연령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침해는 장애가 아닐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신체능력상의 저하, 젓먹이의 보행 및 언어무능력 등이 전형적인 나이에서 나타나는 능력저하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건강상태가 바로 아동과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경우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장애인동등지위법상의 이 특징은 일반적 접근이 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하여서는 접근의 어려움이 나이때문인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합한 기준이다. 또한 차단물없음은 단지 장애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인구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고령자들을 위해서도 고려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30) „Menschen, die langfristige körperliche, seelische, geistige oder Sinnesbeeinträchtigungen haben, welche sie in Wechselwirkung mit verschiedenen Barrieren an der vollen, wirksamen und gleichberechtigten Teilhabe an der Gesellschaft hindern können.“

31) Abschlussbericht, S. 433-439.

넷째, 기저에 놓인 장기간 지속되며 연령에 비전형적인 기능장애가 당사자의 공동체적 삶의 참여를 제한하는 원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는 항상 좋지 않은 환경조건과의 상호작용 속에 있는 것이지 소위 결함(Defizit)자체에만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삶의 영역에서 참여가 제한되었는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소통, 이동성, 학교교육, 직업활동 등으로 유형화하는 유형화시스템³²⁾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2) ‘장애물없음(Barrierefrei)’ 개념 분석

장애인동등지위법의 제4조³³⁾에서는 일반규정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장애물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주의 장애인동등지위법에서는 연방법상의 정의와 거의 동일한 장애물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법제4조에서는 사람들이 ‘장애물’로 인하여 삶에 대한 참여가 방해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객체(Gegenstände)와 생활영역을 나열하고 있다. 장애물 없음을 대한 요청은 장애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장애인을 위하여 모든 구성된 삶의 영역(gestaltete Lebensbereiche)³⁴⁾과 관련되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개념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조명등 설치 등의 건축상의 여러 조치들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구성된 생활환경에 대해 포괄적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점은 입법과정에서 입법자들이 소통영역에서 정서적, 정신적, 학습장애인들의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³⁵⁾는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특별한 어려움없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Zugang)과 사용가능성(Nutzbarkeit)’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원칙적으로 장애인만을

32) Nachzulesen unter: http://www.dimdi.de/dynamic/de/klasi/downloadcenter/icf/endafassung/icf_endfassung-2005-10-01.pdf.

33) (구) 제4조 Barrierefrei sind bauliche und sonstige Anlagen, Verkehrsmittel, technische Gebrauchsgegenstände, Systeme der Informationsverarbeitung, akustische und visuelle Informationsquellen und Kommunikationseinrichtungen sowie andere gestaltete Lebensbereiche, wenn sie für behinderte Menschen in der allgemein üblichen Weise, ohne besondere Erschwernis und grundsätzlich ohne fremde Hilfe zugänglich und nutzbar sind.

34) 인위적 생활환경을 의미하며, 자연적 환경, 예컨대 숲 등에서의 ‘장애물 없음’ 개념이 적용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들길(Feldweg)에는 이 개념이 적용된다.

35) BT-Drs. 14/7420, 24.

위하여 산책을 위한 특별한 후문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일반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 접근성은 유엔장애인인권협약 제3조 f.호상의 근본원칙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모두 동등하게 보장이 되는 동권적인 접근성은 모든 독립적 삶의 실현과 모든 사회영역에서의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적인 형량절차에서는 장애물없음의 조성이 적당하게 고려되어야만 하는 것이다.³⁶⁾ 자립원칙이 장애물없음을 위한 근본적인 전제가 된다. 장애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기구를 사용하면서 가능하면 외부의 도움없이 혼자 자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삶에 대한 참여가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시각장애인이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혼자 인터넷사이트를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는 것도 포함된다. 유엔장애인인권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없는 영역은 특히 참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으로서, 교육(제24조 제5항), 건강(제25조 2문), 재활(제26조 제1항), 휴양(제30조 제5항 c.호, e.호)이다. 장애물로 인하여 장애인의 일반적인 접근이 방해가 된다면, 이는 유엔장애인인권협약 제5조 제2항상의 차별을 의미하며, 기본법 제3조 제3항 2문에 반하는 장애인차별을 성립시킨다고 할 것이다.

장애의 개념은 장애물없음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점은 특히 유엔인권협약 제1조 2문에서 ‘장애’를 ‘장애물’과의 상호작용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장애물없음의 정도는 직접적인 사실관계에서 이것이 장애인의 참여를 방해 또는 촉진함에 따라 장애가 심화되는지 혹은 약화되는지를 통해 나타난다.

(3) 일반적 차별금지규정의 분석

법제7조에서는 일반적 차별금지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유엔장애

36) 유엔장애인 인권협약 제9조 a, b.호에서는 장애물없는 영역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을 나열하고 있으며, 이는 예시적이다. Schulen, Wohnhäuser, medizinische Einrichtungen, Arbeitsstätten, Straßen und Transportmittel genannt sowie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등이 대표적 영역이다.

인인권협약에서 ‘적합한 대책(angemessene Vorkehrung)’에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강제적인 근거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이하게 처우를 받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삶에 대한 동권적인 참여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침해”를 받은 경우 차별이 존재한다. 제3항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차별금지규정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자는 사회법전 제9장 제81조에서 규정된 노동법 영역에서의 해고보호명령을 상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무엇보다도 간접차별과 직접차별의 명확한 구분과 정의를 두고 있지 않는 점을 비판할 수 있다. 동 조항에서는 “간접적, 직접적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데, 언제 이러한 침해가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다. 물론 유럽법상의 확립된 개념³⁷⁾들을 적용하여 해석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투명성의 관점에서 그러한 모호한 개념은 피해야 하는 것이며, 이해가 가는 규정이어야만 예방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동등지위법에서는 차별임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비장애인과 비교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장애인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영국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에 있어서 입법을 통해 중대한 발전을 이루어 냈다. 즉 2010년 반차별법(Antidiskriminierungsrecht)의 개선의 과정에서 차별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었는데, 동권법(Equity Act) 2010Sec. 15에서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동등지위법상의 차별금지도 영국의 정의와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완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유엔장애인인권협약과 일반법인 일반적 동등처우법에 따라, 그리고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브란덴부르크의 장애인동등지위법에 따라 장애인이 사실관계나 구성요건을 믿을만 하게 만들면, 장애로 인해 차별을 했다고 추정되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정도로 입증책임이 완화된다고 보아야 한다.

37) 유럽연합의 차별금지지침에서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의 개념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연방장애인동등지위법(§ 5 Abs. 1 und Abs.2 Bundes-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에서는 유럽연합의 지침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규정하고 있다.

둘째, 동권법상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한 대책’은 매우 적극적인 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차별로부터의 보호의 출발점은 차별이 발생하기 전의 시점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장애물없음의 개념과 이 ‘적합한 대책’은 예방적 동기를 가진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으며, 발생한 차별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장애인의 참여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적합한 대책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장애물없음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오히려 장애인을 동일하게 대우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장애인에게는 일반적 평등명령을 넘어서 실질적 평등개념을 배경으로 하는 ‘차이에 대한 권리(Recht auf Differenz)’도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

넷째, 법제2조에서 ‘장애여성의 이익(Belange)에 대한 고려’를 규정하면서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을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여성의 이익”에 대해서는 스테레오타입의 성역할을 가지고 접근하기 보다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유럽재판소는 반차별적인 규정들이 평등의 과정에서 극복되어야 하는 바로 그 전통적인 성역할상과 부정적인 연상(Assoziation)의 정립으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³⁸⁾ 따라서 예컨대 부모가 될 권리 또는 아동돌봄시설의 장애물없음에 관한 사항에서는 장애인 부모도 그 관철에 대한 동등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는 많은 사회적 영역에서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여성에 대해서는 특정한 요소들이 배가가 되어 다층적 차별이 발생된다. 따라서 제2조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동조에 따라 장애여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조치가 정당화된다. 유엔장애인인권협약에 따라 독일은 집안에서나 밖에서 성적 관점을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모든 폭력,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 영역에서의 활동이 부족하다. 연방아동청소년여성노인부의 수탁을 받아 진행된 연구인 “독일에서 장애여성의 삶의 환경과 부담, 그리고 침해”³⁹⁾에서는 여성과 소녀의 삶에서 폭력과 건강상의 침

38) EuGH v. 19.3.2002, C-476/99(Lommers).

해 또는 장애가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잘 보여준다. 이 연구의 설문에서는 아동, 청소년 연령에서 여성들이 인구의 평균보다 3배까지 더 많은 성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설문에 답한 장애소녀들은 신체적, 성적, 심리적 공격에 대하여 흔히 무방비이고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공격을 장애와 직접 결부시키고 있다. 특히 시설에서 공동거주인이나 직업동료, 돌봄인 등에 의한 심한 폭력에 내몰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 및 지원조치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⁴⁰⁾

(4) 장애물없음 명령의 분석

장애인동등지위법 제2장 제8-11조에서는 공권력 담당자의 장애물없음 구축을 위한 의무를 규정한다. 이 명령이 유엔장애인인권협약에 상응하여 확장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1) 건축과 교통영역에서 장애물없음

제8조에 따라 대규모 신축-, 개축-, 증축건물에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 수준’에 따라 장애물없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군사적 건물은 제외되어 있어 군사적 건물과 행정적 건물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구분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연방군대에서 군대행정청, 대학교, 병원 등 시민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동 규정에 따라 장애물없이 구성되어야 한다.

동조에서는 “큰(대규모)”이라는 건축규모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건축비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 통상적인 견해에 따르면 백만유로 이상의 대규모 건축에만 장애물없음 명령이 적용된다고 본다. 그러나 법에서 액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큰”을 전통적인 관념에 따라 백만유로의 액수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소규모의 건물에서는 소액일지라도 건축이 “크게” 개축 혹은 증

39) Schröttle, „Lebenssituation und Belastungen von Frauen mit Behinderung und Beeinträchtigung in Deutschlanddas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 2013.

40) Abschlussbericht, S. 440-456.

축, 신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액수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규모의 신축-, 개축-, 증축건물도 장애물없이 구성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2) 구두상 의사소통의 조력(Kommunikationshilfe)

법 제9조와 더불어 장애인이 행정기관과 장애물과 차별이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위한 초석이 놓여졌다고 할 수 있다. 동 규정에 따라 청력 및 언어장애인은 연방 행정기관과 구두상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행정절차의 범주에서의 권리들을 인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독일어 수화, 음성언어동반 수화 또는 다른 적합한 의사소통보조기구들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은 독일어 수화를 독자적 언어로 인정한 동법 제6조 제1항과 한 쌍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음성언어 동반 수화를 독일어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인정한다. 제3항에서는 청력 및 언어장애인이 법에서 정한 정도로 이 두 가지의 의사소통가능성을 위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권리주체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소통도우미(글씨번역가 등), 의사소통방법, 의사소통기구 등 기타 다른 적합한 의사소통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규정에는 없지만 관용독일어를 배우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범주의 사람들도 행정기관과의 접촉에서 다양한 다른 의사소통수단들을 사용해서 상호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제9조 상의 행정절차에서 의사소통상의 조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사안마다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권리주체의 바램에 근거한 광범위한 수화통역자, 기타 다른 적합한 의사소통조력”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들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이러한 의사소통조력수단들을 준비하여 놓는 것은 의무이다. 이러한 의무는 직접 그 수단들을 보유하거나 혹은 다른 사적 단체나 사람을 통해 적합하게 조달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실행이 된다.

3) 문서상 장애물 없음

관청과 서류를 통한 접촉을 하는 경우를 위해 법 제10조 제1항 1문에서는 통지(Bescheid), 일반적 조치(Allgemeineverfügung), 공법상 계약(öffentlich-rechtliche Verträge), 서식(Vordruck)은 장애인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요청은 단지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지적인 제한(kognitive Einschränkung)을 가진 사람에게도 유효한 것으로서 이러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행정청의 행위를 이해하고 수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한편으로는 장애인들에게 그들이 가진 다양한 인지능력(Wahrnehmungsfähigkeit)을 가능한 고려하는 것을 보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기관이 서류형식을 작성할때부터 이미 장애에 따른 제한을 가지는 사람들을 고려하도록 도움을 준다. 맹인과 시각장애인은 행정절차에서 그들에게 보장되는 고유한 권리를 인지하기 위하여 추가적 비용없이 그들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문서들이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노동사회부의 '연방정기관에서 장애물없는 서류에 관한 명령(이하 VBD)⁴¹⁾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조의 적용대상에 정신장애인이 빠져있어 정신장애인의 추가비용 없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연방기관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도 자신의 법적 상태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이해하고 행정절차에서 자신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요구가 충족될 필요가 있다. 또한 VBD에서는 맹인과 시각장애인에 한정하여 장애물없는 서류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서류에 따른 부속서도 권리주체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설명서나 정보소책자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을 통해 연방행정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통한 자립적이며 독립적인 의사형성이 제한을 받게 된다.

2013년 '법원과의 전자적 방식을 통한 법적 교류(Rechtsverkehr)를 촉진하기

41) Verordnung zur Zugänglichkeit von Dokumenten für blinde und sehbehinderte Menschen im Verwaltungsverfahren nach dem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Verordnung über barrierefreie Dokumente in der Bundesverwaltung - VBD) Ausfertigungsdatum: 17.07.2002
Vollzitat: "Verordnung über barrierefreie Dokumente in der Bundesverwaltung vom 17. Juli 2002 (BGBl. I S. 2652)".

위한 법률'⁴²⁾이 제정되어 2014.7.1을 기점으로 기존의 '장애물없는 서류준비에 대한 필요성 심사' 규정이 삭제되었고, 장애물없는 서류 규정을 확대하였다. 기존 2014.6.30까지 유효했던 규정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만일 장애인이 변호사를 통해 법률대리를 하고, 사안이 일목요연하여 변호인이 시각장애인이나 맹인에게 잘 설명을 할 수 가 있는 경우라면 장애인의 이 경우에는 점자로 서류를 만들 필요성이 없어서 법률서류들에 대한 접근성요청에서 예외가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⁴³⁾

4) 장애물없는 정보기술(Barrierefreie Informationstechnik)

첫째, 장애인동등지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의무

동조의 규정은 유럽연합이 2002년에 가결한 액션플랜 "e유럽 2002-모든 사람을 위한 정보사회(eEurope 2002 - eine Informationsgesellschaft für alle)"의 내용을 전환적용한 것이다. '전자행정 촉진을 위한 법률'⁴⁴⁾이 가결되면서 인터넷영역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법제11조는 제소가능한 연방행정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기관들은 정보기술을 점차 기술적으로 구성하여서 장애인들이 장애물없이 이러한 정보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둘째, BITV 2.0⁴⁵⁾을 통한 수준과 전환적용기간의 확정

법 제11조는 연방사회노동부의 2002년 제정된 명령인 "장애물없는 정보기술 명령(BITV)"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동 명령은 연방기관과 장애인단체를 통한 입법평가 후 2011.09.12. BITV 2.0로 대체되었다. 개정규정의 특징은 유엔장애인 인권협약 제9조의 광범위한 전환적용을 하여 구 명령에 비해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추고 있고 청각장애인, 정신장애인, 학습장애인을 매우 크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BITV 2.0는 추상적 법률개념을 가지고 행정기관에 장애없음의 구축

42) Gesetz zur Förderung des elektronischen Rechtsverkehrs mit den Gerichten Vom 10. Oktober 2013

43) BGH v. 10.01.2013, I ZB 70/12, NJW 2013, 1011.

44) Gesetz zur Förderung der elektronischen Verwaltung (EGovernment-Gesetz- EGovG)

Ausfertigungsdatum: 25.07.2013.

Vollzitat: "E-Government-Gesetz vom 25. Juli 2013 (BGBl. I S. 2749)"

45) Barrierefreie-Informationstechnik-Verordnung (BITV) vom 27.04.2002

에 대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게 특정한 승인된 기술수준의 달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사적영역의 영업상 제안자들의 장애물 없는 정보기술에 대한 배려조치 장애인동등지위법 제5조의 목표합의(Zielvereinbarung)를 통하여 행정기관의 의무를 넘어 영업을 하는 사인에 대해서도 장애물없는 정보기술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기속적인 사안이 아니라 권고적 차원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 시행이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일정한 규모의 사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⁴⁶⁾

(5) 장애인동등지위법의 개정에 미친 영향

연방정부는 입법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입법개선을 예고하였으며, 연방정부가 준비하여 제출한 법률안은 2016년 7월 1일 의회에서 가결되었다. 연방노동사회부장관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올해 우리는 장애인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선하고자 한다. 장애인동등지위법의 개정은 이를 위한 서곡이다. 동법은 무엇보다 장애물없음이 확장되도록 힘을 쓸 것이고 공권력 내에서 가능하면 장애인차별이 계속적으로 철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우리사회 안에서 자기결정에 따른 동권적인 삶을 이뤄나갈 수 있어야 한다.”⁴⁷⁾

유엔 장애인인권협약에 상응하게 법률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⁸⁾

첫째, 장애개념의 개정이다. 장애개념은 유엔 장애인인권협약상의 장애개념에 상응하게 개정되었다. 새로운 장애개념에 따라 결함위주의 장애개념이 지양되고 장애를 환경과 편견에 종속되는 ‘장애물’과의 상호 영향하에서 나타나는

46) Abschlussbericht, S. 456 ff.

47) Kabinett beschliesst Gesetzentwurf zur Weiterentwicklung des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es, 13. Januar 2016. in: <http://www.bma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16/gesetzentwurf-weiterentwicklung-behinderten-gleichstellungsrecht.html>

48) <http://www.bma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16/gesetzentwurf-weiterentwicklung-behinderten-gleichstellungsrecht.html>

침해의 결과로서 보았다. 또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참여를 중심에 둔 것도 특징이다.

둘째, 차별금지명령의 개선이다. 장애인동등지위법에서는 이미 공권력의 담당자가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유엔 장애인인권협약에 맞게 장애인을 위한 적합한 대책(angemessene Vorkehrung)의 거부(Versagung)가 동법상의 차별이라는 점이 보완되었다. 적합한 대책이란 개별 사안에서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적합하고 요구되는 조치로서, 공권력담당자들에게 비례에 합당하지 않거나, 수인할 수 없이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 조치들을 말한다.

셋째, 건축과 정보기술의 영역에서 연방행정기관 내의 장애물없음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2002년 장애인동등지위법의 발효와 더불어 연방의 신축건물과 대규모 개축과 확장건축(이백만 유로 이상)은 장애물없이 구성되어야 하였지만 이러한 정도가 아닌 건축조치들은 '장애물없음' 조치를 하는 건물에 해당되지 않았다.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는 소규모의 건축조치에 있어서도 장애물없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방기관의 인터넷상의 출연과 인터넷상 제안(Angebot)들은 장애인동등지위법의 제정과 더불어 이미 장애물없이 구성되어야 한다. 연방 근무자들이 장애물 없는 인트라넷과 장애물 없는 서류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업무의 디지털화와 고령화와 관련점에서 요청되는 것이다.

넷째, 개정을 통해 쉬운 언어(leichte Sprache) 사용이 강화되었다. 연방기관은 더 많은 정보를 쉬운 언어로 제공해야 하고, 2018년부터는 정신장애인에게도 무료로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쉬운 언어에 관한 장애인동등지위법상의 규정은 사회행정절차와 사회급부의 실행에도 적용된다.

쉬운 언어는 단어선택, 문법, 문장구성 등에 있어서 특히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언어이다. 무엇보다도 가능하면 단순한 단어들이 사용되어야 하고 문장들은 짧고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야한다. 쉬운 언어를 통해 정신장애인은 외부도움 없이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자기결정에 따른 참여의 통로가 된다. 쉬운 언어에 관해서는 이미 '장애물없는 정보기술명령(BITV 2.0)'에서 법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다섯째, 개정을 통해 독일연방 광부-철도-해양(Knappschaft-Bahn-See)연금보험 내에 설치된 ‘장애물없음을 위한 연방전문처’를 통해 장애물없음의 적용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기관은 기관들에게 장애물없음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지원을 해줌으로써 장애물 없음을 개선에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관은 또한 경제계의 장애물없음에 대한 자문을 하고 대국민작업을 수행한다.

여섯째, 장애인의 이익을 위한 연방장애인수입관에 조정처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동등지위법에 따른 분쟁에 있어서 법원외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절차를 도입한다. 연방기관에서 장애인동등지위법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정기관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동등지위법상의 단체가 단체소송을 할 수 있다.

일곱째, 개정을 통해 연방노동사회부를 통한 장애인단체, 특히 자기대표조직(Selbstvertretungsorganisation)의 참여촉진을 위한 재정적 촉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촉진은 장애인이 공적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강화하여 준다. 이를 위하여 2016년 재정으로 500,000유로가 책정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매년 백만유로가 사용된다.

IV.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관련 법제의 특징은 장애종류별로, 그리고 급부종류별로 다양한 개별 법률들이 제정되고 있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보건복지법에서 장애등급규정,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장애인의 복지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이 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11.19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접근권을 위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의 이동편의증진을 통한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방송법 제69조 제8항에서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폐쇄자막·화

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법에서 규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법, 일반적 동등처우법, 장애인 동등지위법, 사회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법의 구조는 차별받았던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데 용이하다. 즉, 최고규범인 기본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를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장애인 평등실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 차별금지법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며, 특별법적 관계에 있는 장애인동등지위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더불어 실질적인 동등실현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실질적 평등실현, 그리고 자기결정에 따른 참여를 위하여 2002년 제정된 장애인 동등지위법은 일반적 동등처우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 2002년 장애인 동등지위법의 내용도 우리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비하면 매우 진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의 입법평가를 통하여 동법이 목적인 장애인의 평등실현과 그 도구로 사용되는 차별금지, 장애물 없음이 좀 더 확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연방정부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정된 것이 2016년 장애인 동등지위법이다. 개정법은 유엔장애인 차별철폐협약의 내용을 가능하면 광범위하게 수용하고자 하였다.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장애인개념을 개정하였으며, 동법상 적용을 받는 공권력의 담당자들도 명확하게 하였다. 그리고 장애물없음에 대한 개념정의와 적용영역, 공권력 주체에 대한 규정의 정비와 더불어 필요한 시행령의 정비를 하였다. 사적 영역에서는 목표합의를 통하여 장애물없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전문처를 실시하여 조연과 축진이 이루어지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그리고 단체소송을 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의 역할도 중시되어 이 단체가 법적 조력자로서 단체소송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목표합의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고 목표합의를 위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도 장애인 평등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하게 개별법률로서 장애인관련 의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현재의 입법태도를 지양하고 ‘배제가 아닌 포섭(Inklusion)’을 모토로 하는 독일의 예에 따라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11조 평등권조항에 차별금지사유로 ‘장애’를 명문화하고, 일반법으로서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해서 독일과 같은 장애인동등지위법(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엄밀한 평가 후 장애인동등지위법으로 전면개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현재의 접근권의 수준을 넘어서 독자적이며 독립적인 참여의 전제가 되는 장애물없음의 개념을 전면도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신옥주, 독일 장애인법제를 통해 살펴 본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급부·감면서비스
개편방향, 법학논총, 제33집 제2호(2016.6.)

신옥주, 독일의 장애인 통합을 위한 법제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6호 2014.12.;
보건복지부/한국법제연구원,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방향 연구, 2014.12.에 발간된 용역연구보고서

신옥주, 독일의 성별입법영향평가 고찰, 입법평가 창간호, 2009.

Uni. Kassel Humanwissenschaft(FB01), Evaluation des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es im Auftrag des 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es, Abschlussbericht, Leitung: Prof. Dr. jur. Felix Welti. 1.
Mai 2014.

Nachzulesen unter:

[http://www.dimdi.de/dynamic/de/klasi/downloadcenter/icf/endaussage/
icf_endaussage-2005-10-01.pdf](http://www.dimdi.de/dynamic/de/klasi/downloadcenter/icf/endaussage/icf_endaussage-2005-10-01.pdf).

Schröttle, „Lebenssituation und Belastungen von Frauen mit Behinderung und
Beeinträchtigung in Deutschlanddas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 2013.

Feldes/Kamm/Peiseler/Rehwald/von Seggern/Westermann/Witt:
Schwerbehindertenrecht. Basiskommentar zum SGB IX mit Wahlordnung.
10. Auflage. Bund-Verlag, Frankfurt am Main 2009.

[http://www.behindertenbeauftragte.de/DE/DieBeauftragte/DieAufgabe/Aufgabe_
node.html#doc1825870bodyText1](http://www.behindertenbeauftragte.de/DE/DieBeauftragte/DieAufgabe/Aufgabe_node.html#doc1825870bodyText1)

[http://www.bma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16/gesetzesentwurf-weiterentwi
cklung-behindertengleichstellungsrecht.html](http://www.bma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16/gesetzesentwurf-weiterentwicklung-behindertengleichstellungsrecht.html)

[http://www.bma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16/gesetzesentwurf-weiterentwi
cklung-behindertengleichstellungsrecht.html](http://www.bma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16/gesetzesentwurf-weiterentwicklung-behindertengleichstellungsrecht.html)

국문초록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등급제의 폐지와 이에 따른 급부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향설정이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제의 개선과 더불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독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현은 평등실현과 차별금지, 사회 및 노동참여, 그리고 자기결정권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압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삶을 이루기 위한 전제로서 ‘장애물 없음(Barrierefrei)’이 전방위적으로 요구된다. 개별적인 이동권, 접근권의 보장차원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장애인 혼자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실현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실현하기 위해 적합한 체계적인 법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기본법에서 장애인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일반법인 일반적 차별금지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AGG)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 한다. 또한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장애인동등지위법(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BGG)을 통해 차별받지 않고 자기결정에 의한 삶이 보장된다. 그리고 사회법전(SGB) 제9권 제1장 일명 장애인법에서는 장애인의 사회 및 노동 참여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장 일명 중증장애인법에서는 중증장애인의 특별한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문화적 최저생계비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을 하고 있으며, 이를 노동능력이 있는 실직자에 대한 사회보장과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사회부조로 나누어 급부하고 중증노동자의 경우 중증장애인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회부조를 보완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계안정을 위한 안전망을 잘 구축하고 있다.

2014년 4월 1년에 걸친 장애인동등처우법에 대한 입법평가 종료되었다. 그 결과 2016년 큰 폭의 법의 개정이 있었다. 장애개념이 변화와 더불어 동법상의 공권력담당자 규정이 삽입되었고 장애물없음에 대한 개념 및 확대가 이루어졌으

며, 사적영역에서도 목표합의를 통해 장애물없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목표합의와 관련하여 장애인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장애물없음의 강화를 위하여 연방장애물없음을 위한 전문처가 신설되었다.

주제어

독일 장애인 동등처우법 입법평가,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실현과 참여, 장애물 없음, 공권력 담당자, 목표합의

Zusammenfassung

Eine Studie über die Evaluation des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es in
Deutschland

Shin, Ok-ju*

Berücksichtigt der Diskussion über den Abbau des Behinderungsgradsystems und Leistung ist es wichtig, die relevante sämtliche Gesetze und durch die Massenarbeit die Sicht über Behinderten zu verbessern.

Man könnte Neues Paradigma im Bereich von Behinderten in Deutschland mit den Stichwörter 'tatsächliche Gleichberechtigung', 'Antidiskriminierung' und 'Teilhabe an der Gesellschaft' erklären. Die Voraussetzung dafür ist "Barrierefrei", die als das wichtigste Mittel weitgehend in verschiedenen Bereichen erforderlich gesehen werden. Barrierefrei bedeutet viel mehr als Recht auf Transport und Zugangrecht im Sinne des Behindertendiskriminierungsverbotsgesetz Koreas. Nach dem Art. 4 BGG sind Barrierefrei bauliche und sonstige Anlagen, Verkehrsmittel, technische Gebrauchsgegenstände, Systeme der Informationsverarbeitung, akustische und visuelle Informationsquellen und Kommunikationseinrichtungen sowie andere gestaltete Lebensbereiche, wenn sie für behinderte Menschen in der allgemein üblichen Weise, ohne besondere Erschwernis und grundsätzlich ohne fremde Hilfe zugänglich und nutzbar sind.

Rechtliche Konstruktion erwiesen sich als geeignet, um die tatsächliche Gleichstellung und Teilhabe der Behinderten zu ermöglichen. Als die höchste Norm

* Prof. Dr. Shin, Okju, nat. Uni. Chonbuk, School of Law

Bestimmung für Schwerbehinderten einschliesslich die allgemeine Bestimmung.

2014 wurde BGG evaluiert. Dadurch wurde neues BGG im Jahr 2016 erlassen. Die wichtige Veränderung des Gesetzes lautet: Ergänzung des Behindertenbegriffs, Einfügung des Trägers der öffentlichen Gewalt, Zielvereinbarung, Verstärkung der Rolle der Behindertenvertretendeverbände, Schaffung der neuen Einrichtung namens Bundesfachstelle für Barrierefreiheit

verbietet GG die Diskriminierung wegen der Behinderung. AGG ist allgemeines Gesetz im Bereich des Diskriminierungsverbots. BGG setzt die die tatsächliche Gleichstellung und Teilhabe der Behinderten mittels Barrierenfrei. Für die Sicherung des menschenwürdigen Lebens gewährleistet SGB mit verschiedenen Regelungen für die Teilhabe an der Gesellschaft. Insbesondere im SGB IX, das als Behindertengesetz gilt, findet man die spezielle.

Stichwörter

Evaluierung vom BGG, tatsächliche Gleichstellung und Teilhabe der Behinderten, Barrierenfrei, Träger der öffentlichen Gewalt, Zielvereinbarung,